
	규정	문서번호	TWP-A311
		제정일자	2003. 07. 01.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6. 02. 26.
		개정번호	4

목 차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학점인정 대상 자격증)
- 제4조(학점인정 자격증 지정)
- 제5조(졸업학점 인정)
- 제6조(성적표기)
- 제7조(학점인정 신청)
- 제8조(학점인정 한도)
- 제9조(학점취소)
- 부칙
- 별표

작성부서	교무학생처	제정일자	2003. 07.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교무학생부처장	산학입학처장	교무학생처장	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311
		제정일자	2003. 07. 01.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6. 02. 26.
		개정번호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학생의 국가(기술)자격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학점인정 대상 자격증) ① 자격증은 졸업학기 기말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민간자격증과 총장이 인정하는 전공 관련 민간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학점인정 자격증 지정) ① 각 학과는 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 운영을 위하여, 전공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점인정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자격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은 매 학년도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학점인정 지정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점인정 대상 자격증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졸업학점 인정) 자격증 학점인정은 3학점 또는 2학점으로 하며, 이를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6조(성적표기) 자격증 학점인정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하단의 정규학기 이외 영역에 ‘자격증’으로 표기하며,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제7조(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 기말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사본 및 학점인정 신청서를 우리 대학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 한도) 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생 1인당 총 3학점 이내로 한다.

제9조(학점취소) 위조·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또는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규정	문서번호	TWP-A311	
		제정일자	2003. 07. 01.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26. 02. 26.	
		개정번호	4	페이지

확인된 경우에는, 졸업 후라도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